

제 4 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 4.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 가. **관세 당국**이란 각 당사자의 법에 따라 그 당사자의 관세법 및 규정의 행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모든 당국을 말한다.
- 나. **관세법 및 규정**이란 상품의 수입, 수출, 이동 또는 보관, 관세 당국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행정 및 집행, 그리고 그 법적 권한에 따라 관세 당국이 제정한 모든 규제에 관한 법적이고 규제적인 규정을 말한다.
- 다. **통관 절차**란 당사자의 관세 당국이 그 당사자의 관세법 및 규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수단에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 라. **특송화물**이란 상품의 신속한 국경 간 이동을 위하여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관세 당국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의하여 또는 그 기업을 통하여 수입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 마. **운송수단**이란 자연인, 상품 또는 물품을 운송하여 당사자의 관세 영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차량 및 항공기를 말한다.

제 4.2 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각 당사자의 관세법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 나. 각 당사자의 통관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증진하는 것
- 다. 각 당사자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가능한 한도에서 관련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 라. 당사자들의 관세 당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 마. 세계 및 역내 공급망을 위한 강화된 환경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자들 간 무역을 원활히 하는 것

제 4.3 조

적용범위

이 장은 당사자들 간 교역되는 상품 및 각 당사자의 관세 영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

제 4.4 조

일관성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법 및 규정이 자신의 관세 영역에 걸쳐 일관되게 이행되고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당사자의 관세법 및 규정에 따라 재량이 부여된 경우, 그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부여된 재량의 행사를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재량은 그 당사자의 관세 영역에 걸쳐 그리고 그 당사자의 관세법 및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행사되어야 한다.

2.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할 때,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 영역에 걸쳐 자신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이행 및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되도록이면 자신의 지역 세관 간 자신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는 행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3. 각 당사자는 제 2 항에 언급된 행정 메커니즘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행정 메커니즘과 관련된 자신의 관행과 경험을 그 밖의 당사자들과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4. 당사자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제 4.20 조(협의 및 접촉선)의 협의 절차에 따라 그 사안에 대하여 그 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 4.5 조

투명성

1. 각 당사자는 다음의 정보를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인터넷에 신속하게 공표한다.

가.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항구, 공항 및 그 밖의 반입지점을 포함한다), 그리고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나. 수입이나 수출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관세 및 조세의 실행세율

다. 정부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에 대하여 수입, 수출 또는 통과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

라. 통관 목적상 생산품의 품목분류 또는 평가에 관련된 규칙

마.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 및 행정 판정

바. 수입, 수출 또는 통과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사.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절차의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아. 불복청구 또는 재심 절차

자. 자신이 당사자인 수입, 수출 또는 통과와 관련된 모든 국가 또는 국가들과의 협정 또는 그 일부, 그리고

차. 관세 할당의 운영과 관련된 절차

2. 특히, 각 당사자는 다음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적절한 경우 가능한 한도에서 갱신한다.

가. 불복청구 또는 재심 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수출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자신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에 관한 설명¹

나. 그 당사자 영역으로의 수입, 그로부터의 수출, 또는 그를 통한 통관을 위하여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그리고

다. 제 4.6 조(문의처)에 규정된 문의처에 대한 연락정보뿐만 아니라 관세 사안에 대하여 문의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3. 가능한 한도에서, 새로운 관세법 및 규정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정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러하게 제안된 새로운 또는 개정된 관세법 및 규정을 공표하거나 달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제안된 관세법 및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그러한 사전통지가 배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각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자신의 법, 규정 및 법적 체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통과 중인 상품을 포함하여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과 규정이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¹ 각 당사자는 이 설명의 법적 제한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재량을 가진다.

발효일 전에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되거나 그에 대한 정보가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자의 언어 외의 언어로 정보의 공표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4.6 조

문의처

각 당사자는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문의에 답변하고 수입, 수출 및 통과에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한다.

제 4.7 조

통관 절차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통관 절차와 관행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하고, 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을 원활히 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그리고 자신의 관세법 및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에서, 자신의 통관 절차가 세계관세기구의 표준 및 권고 관행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자의 관세 당국은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그러한 절차를 검토한다.

제 4.8 조

선적 전 검사

1. 각 당사자는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선적 전 검사의 이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제 1 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그 밖의 유형의 선적 전 검사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각 당사자는 그 이용에 관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권장된다.
3. 제 2 항은 선적 전 검사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적 전 검사를 지칭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목적상 선적 전 검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 4.9 조 도착 전 처리

1. 각 당사자는 도착 즉시 상품의 반출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도착 전에 처리를 시작하도록 상품의 수입에 요구되는 서류 및 그 밖의 정보의 제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 및 그 밖의 정보를 그러한 서류의 도착 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사전에 제출할 것을 규정한다.

제 4.10 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자는 어느 한 당사자의 상품이 자신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요청을 제출한 수입자, 수출자, 정당한 이유를 가진 모든 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음에 대하여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

나.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다.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일련의 특정한 사실에 따른 관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적절한 방식이나 기준 및 그 적용, 그리고

라.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사안

2. 당사자는 신청인이 그 당사자에서 법적 대리 또는 등록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요구는 중소기업의 특정한 수요를 특히 고려하여 사전심사결정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인의 범주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한 요건은 명확하고 투명하며,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지 않는다.^{2,3}

3. 각 당사자는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하기 위한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사전심사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명시하는 절차

나. 각 당사자가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그 신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언제라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사전심사결정이 신청인에 의하여 제공된 사실과 상황, 그리고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밖의 관련 정보에 기초되도록 보장하는 절차, 그리고

라. 사전심사결정이 그 결정에 대한 관련 사실과 근거를 포함하도록 보장하는 절차

4. 각 당사자는 발급 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그 당사자가 결정하는 언어로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한다. 사전심사결정은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된 경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시간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90 일 내에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인에게

²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무역원활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상품위원회를 통하여 이 항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³ 각 당사자는 자신의 등록 절차가 투명하고 신청이 시의적절하게 고려되며, 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결정의 이유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알려지도록 보장한다.

발급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신청 전에 사전심사결정 발급 기간을 명시하고 공개한다. 관세 당국은 신청의 접수 후 명시된 기간보다 늦게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러한 지연의 근거를 통보한다.

5. 당사자는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자는 사전심사결정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상황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6. 당사자는 제 3 항나호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된 추가 정보가 합리적이고 명시된 기간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사전심사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추가 정보의 요청 당시 결정되고 그 당사자는 신청인에게 추가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7. 각 당사자는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 및 행정 규칙, 그리고 사실 및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전심사결정이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부터 사전심사결정이 유효하도록 규정한다. 제 8 항을 조건으로, 사전심사결정은 최소 3 년 동안 유효하다.

8. 다음의 경우 당사자가 사전심사결정을 철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과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한다.

가. 자신의 법, 규정 또는 행정 규칙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거나 관련 정보가 보류된 경우

다.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라. 사전심사결정이 잘못된 경우

9. 당사자는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철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결정이 불완전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 허위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기초한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10. 당사자가 발급한 사전심사결정은 그것을 구한 신청인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11. 각 당사자는 최소한 다음을 공표한다.

가. 제공되어야 할 정보와 양식을 포함한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위한 요건

나. 당사자가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할 기간, 그리고

다. 사전심사결정이 유효한 기간

12. 각 당사자는 상업적 비밀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신이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제 4.11 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자는 당사자들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반출을 위한 당사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상품의 반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제 1 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법 및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과 통관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의 제출로부터 48 시간 내에 상품이 세관으로부터 통관되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상품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하여 선별된 경우, 그러한 검사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제한되며, 과도한 지체 없이 행해지고 완료된다.

4. 각 당사자는 도착 전, 도착 즉시 또는 도착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결정 전에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다만 그 밖의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한 반출의 조건으로, 당사자는 보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요구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증을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합치되는 어떠한 방식으로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몰수, 또는 처리하는 그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부패성 상품의 피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한정하여, 각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통관 통제로부터 부패성 상품의 반출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가급적 가장 빠른 시간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이 도착하고 반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한 후 6 시간 내, 그리고

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 당사자의 관세 당국의 업무시간 외

7. 각 당사자는 요구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조정하는 경우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8. 각 당사자는 부패성 상품의 반출이 있을 때까지 수입자가 그 상품의 적절한 보관을 마련하도록 주선하거나 허용한다. 각 당사자는 수입자에 의하여 마련된 모든 보관 시설이 자신의 관련 당국에 의하여 인증 또는 지정되었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을 이동시키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포함하여 그 보관 시설로의 상품의 이동은 요구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실행 가능하고 국내 법률에 합치되는 경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그 보관 시설에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를 규정한다.

제 4.12 조 정보기술의 적용

1. 각 당사자는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신속한 통관과 반출을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기초하여 통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한다.
2. 각 당사자는 가능한 한도에서, 위험관리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적된 상품 도착 전 자료의 제출을 포함하여 그 상품의 반출을 위한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사용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무역행정문서를 대중이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4. 각 당사자는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태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5. 종이 없는 무역행정의 사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 개발 시, 각 당사자는 국제기구 산하에서 만들어지는 국제 표준 또는 방식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6. 각 당사자는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의 수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들과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협력한다.

제 4.13 조 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

1. 각 당사자는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하 이 장에서 "공인업체"라 한다)에 제 3 항에 따라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및 절차와 관련된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는 그러한 무역원활화 조치를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관 절차를 통하여 모든 업체에 제공할 수 있고 별도의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2. 공인업체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명시된 기준은 당사자의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요건의 준수, 또는 비준수의 위험과 관련된다.

가. 공표되는 그러한 기준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1)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에 관한 적절한 기록
- 2) 필요한 내부 통제를 허용하는 기록 관리 시스템
- 3) 적절한 경우, 충분한 담보나 보증의 제공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그리고
- 4) 공급망 안전

나. 그러한 기준은

- 1) 같은 조건하에 있는 업체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유발하기 위하여 고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 2) 가능한 한도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제 1 항에 따라 규정된 무역원활화 조치는 다음의 조치⁴ 중 최소한 세 가지를 포함한다.

가. 적절한 경우, 낮은 수준의 서류 및 자료 요건

⁴ 가호부터 사호까지에 열거된 조치는 모든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공인업체들에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나. 적절한 경우, 적은 비율의 물리적 검사와 조사

다. 적절한 경우, 신속한 반출 시간

라.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납부 연기

마. 광범위한 보증 또는 감액된 보증의 사용

바. 주어진 기간 내 모든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단일 세관신고, 그리고

사. 공인업체의 사업장이나 관세 당국에 의하여 인증받은 다른 장소에서의
상품의 통관

4. 각 당사자는 국제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인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표준에 기초하여 공인업체 제도를 개발하도록 권장된다.

5. 각 당사자는 업체에 제공되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들에 공인업체 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6. 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우, 그들 각자의 공인업체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제 4.20 조(협의 및 접촉선)에 따라 지정된 접촉선 및 상품위원회를 이용하여 다음을 통하여 협력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 그러한 제도 및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관한 정보 교환

나. 비즈니스 관점 및 경험에 관한 시각, 그리고 비즈니스 지원활동에서의
모범사례 공유

다. 그러한 제도의 상호 인정에 대한 접근 방법에 관한 정보 공유, 그리고

라.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제도의 혜택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 그리고 우선, 관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업체에 대한 조정자로서 세관 공무원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

제 4.14 조 위험관리

1. 각 당사자는 통관 통제를 위하여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위험관리를 설계하고 적용한다.
3. 각 당사자는 고위험 탁송물에 대한 통관 통제 및 가능한 한도에서 그 밖의 관련 국경 통제에 집중하고, 저위험 탁송물의 반출을 신속화한다. 각 당사자는 또한 자신의 위험관리의 일부로 그러한 통제를 위한 탁송물을 무작위로 선별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위험관리를 적절한 선별 기준을 통한 위험 평가에 기초하도록 한다. 그러한 선별 기준은 특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상품의 성격 및 상품명, 원산지 국가, 상품이 선적된 국가, 상품의 가격, 무역업자의 준수 기록, 그리고 운송수단의 유형을 포함할 수 있다.

제 4.15 조 특송화물

1. 각 당사자는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최소한 항공 화물 시설을 통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하여 특송화물의 통관을 신속화하기 위한 통관 절차를 다음에 의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한다.⁵

⁵ 당사자가 이 조에서 취급을 규정하는 기존 절차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은 그 당사자가 별도의 신속화된 반출 절차를 도입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 가. 특송화물과 관련된 정보의 도착 전 처리를 규정하는 것
- 나. 가능한 한도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단일 제출을 허용하는 것
- 다. 특송화물의 반출에 요구되는 서류를 최소화하는 것
- 라.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경우 상품이 도착하고 반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한 후 6 시간 내에 특송화물이 반출되도록 규정하는 것
- 마. 당사자가 신고서 및 증명서류 그리고 관세 및 조세의 지불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반입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모든 중량 또는 가치의 선적에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대우를 적용하고, 그러한 대우를 상품의 유형에 기초하여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다만, 그 대우는 서류와 같은 저가의 상품에 제한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 바. 특정 규정 상품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관세 및 조세가 징수되지 않을 최소허용 선적 가격 또는 관세부과 대상 액수를 규정하는 것. 1994 년도 GATT 제 3 조에 합치되게 수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와 같은 내국세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제 1 항의 어떠한 규정도 위험관리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상품의 반입을 검사, 유치, 압수, 몰수, 또는 거부하거나 사후심사를 수행하는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제 1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반출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정보의 제출 및 비자동 허가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 4.16 조 사후심사

1. 상품의 반출을 신속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사후심사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자는 위험에 기초한 방식으로 사후심사를 위한 인이나 탁송물을 선별하고, 이는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투명한 방식으로 사후심사를 수행한다. 그 인이 심사 과정에 관여되고 확실한 결과가 달성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신의 기록이 심사된 인에게 지체 없이 다음을 통보한다.

가. 결과

나. 결과에 대한 이유, 그리고

다. 인의 권리 및 의무

3. 당사자들은 사후심사에서 획득된 정보가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4. 각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관리 적용 시 사후심사의 결과를 활용한다.

제 4.17 조

반출 시간 연구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가 발표한 「상품의 반출에 요구되는 시간 측정 지침」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상품의 반출에 요구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권장된다.

가. 자신의 무역원활화 조치에 관한 평가, 그리고

나. 상품의 반출에 요구되는 시간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기회에 대한 고려

2. 각 당사자는 사용된 방법과 식별된 장애물을 포함하여, 제 1 항에 언급된 반출 시간 연구에서 자신의 경험을 그 밖의 당사자들과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제 4.18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 당국이 행정 결정⁶을 내리는 모든 인에게 자신의 영역에서 다음의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그 결정을 발표한 공무원이나 부서보다 높거나 또는 그로부터 독립된 행정 당국에 의한 행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⁷

2. 당사자의 법률은 행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이 사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 전에 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불복청구 또는 재심 절차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자는 제1항가호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재심에 대한 결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행정 당국 또는 사법 당국에 대한 추가 불복청구, 그들에 의한 추가 재심 또는 사법당국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도록

⁶ 이 조의 목적상, “행정 결정”이란 개별 사례에서 특정한 인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결정을 말한다. 이 조에서 언급된 행정 결정은 1994 년도 GATT 제 10 조의 의미에서의 행정 행위 또는 당사자의 법, 규정 및 법적 체계에 규정된 대로 행정 행위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를 다루기 위하여, 당사자는 제 1 항가호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재심에 대한 권리를 대신하여 관세 당국이 행정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지시하기 위한 대안적 행정 메커니즘 또는 사법적 이용을 유지할 수 있다.

⁷ 브루나이 다루살람은 그 결정에 대한 공정한 재심을 제공하기 위한 독립 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여 이 항을 준수할 수 있다.

보장한다.⁸

가. 자신의 법 또는 규정에 명시된 정해진 기간 내, 또는

나. 과도한 지체 없이

5. 각 당사자는 제 1 항에 언급된 인에게 행정 결정에 대한 이유가 제공되도록 보장하여 그러한 인이 필요한 경우 불복청구 또는 재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각 당사자는 제 1 항에 언급된 인이 제 1 항에 언급된 행정 결정 또는 누락에 대하여 재심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7. 각 당사자는 이 조가 자신의 관세 당국 외에 관련 국경 기관이 내린 행정 결정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권장된다.

8.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이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및 그 결정에 대한 이유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제 4.19 조

관세협력

1. 각 당사자의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들의 관세 당국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나. 통관 모범사례 및 위험관리 기술의 발전과 이행

다.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⁸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불복청구 또는 재심에 대한 행정부작위를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라. 기술력 및 기술의 사용 증진

마. 관세평가협정의 적용, 그리고

바. 당사자들이 상호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통관 사안

2. 각 당사자는 가능한 한도에서, 이 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요한 행정적 변경, 법이나 규정의 수정 또는 수입이나 수출을 규율하는 자신의 법 또는 규정에 관련된 유사한 조치에 대한 시의적절한 통지를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그 통지는 영어나 그 당사자의 언어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제 4.20 조(협의 및 접촉선)에 따라 지정된 접촉선에 제공될 것이다.

3. 당사자의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다른 당사자들과 관세 행정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국경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국경 이동에 관한 절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그 당사자가 국경을 공유하는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한다.

제 4.20 조

협의 및 접촉선

1. 당사자는 이 장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관세 사안에 대하여 그 사안에 대한 관련 세부사항을 제공하면서 다른 당사자에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제 3 항에 따라 지정된 각자의 접촉선을 통하여 수행되고, 관련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요청의 접수일 후 30 일 내에 개시한다.

2. 그러한 협의가 그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당사자는 그 사안을 상품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0 일 내에 이 장의 목적상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 그 연락 세부사항 및 그 밖의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통보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연락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 4.21 조 이행 약정

이 장에 따른 일부 약속을 이행할 때 당사자들의 상이한 준비 수준을 인정하며, 당사자들은 부속서 4-가(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에 명시된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에 특정된 약속의 완전한 이행이 개시한다.